世宗朝의 政治·行政思想

金 雲 泰*

<目 次>

1. 世宗朝의 政治的·社會的 背景
2. 世宗朝의 政治·行政思想
가. 自主·主體思想
나. 民本思想
다. 實用主義的 改革思想
라. 普遍性과 實用性의 創造的 調和
3. 結 語

1. 世宗朝의 政治的·社會的 背景

麗末의 武將 李成桂가 新興儒臣들과 제휴하여 朝鮮朝를 建國(壬申年 1392)한지 27年 뒤인 1419年(己亥年)에 第4代 國王에 오른 世宗大王은 그의 32年間의 在位期間에 政治·文化·經濟·社會 등 各 領域에 빛나는 治績을 남기었다. 太祖朝(1392~1398)로부터 2年間의 定宗朝를 거쳐 第3代 太宗朝(1401~1418)에 이르는 建國初의 期間이 韓國政治史에 있어서 近世國家의 政治權力의 形成期라 한다면, 世宗朝(1419~1450) 32年間은 世宗의 主導下에서 近世 政治文化를 形成하고 儒敎的 官人國家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政治·儀禮·制度·文化·思想的으로 儒敎主義的 基礎를 構築함과 아울러 對明事大關係를 定立해 간 時期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침 이 時期는 麗鮮이 交替되어 儒敎와 佛敎가 交替되는 등 宗敎的·思想的으로 격동하는 時期이었던 만큼 여기서 새로운 儒敎主義 政治文化의 上部構造를 구축하는 것은 長期間의 時日이 소요되는 新生王朝의 課題이었으며 또 王朝交替 후의 對明事大關係를 維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課題이었다. 이와 같은 課題遂行을 위하여 世宗은 우선 學者와 人材를 양성하는데 全力을 경주하고, 世宗 2年 3月에 集賢殿을 설치하여 朱子學과 古制硏究 그리고 著述編纂에 주력하였으며, 世宗 10年에서 同 18年 期間에는 集賢殿學士도 대폭 增員(世宗 10年에 16名에서 世宗 17年에는 32名)하였다. 이들이 점차 學問的으로 성숙되고 壯年期에 접어들면서 政治參與의 氣運이 고조되었으며 言官으로서 혹은 政治人으로서 古制의 실시 및 土着化를 담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當時의 集賢殿硏究員들 중 學究專心을 斷念하여 政治的 現實參與의 希望者는 많았던 것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敎授

으로, 世宗 16年 3月에 集賢殿官員이 모두 學業精進에 실증을 느끼고 言官과 實務者를 많이 志望하고 있는데 「受常參御經筵 謂經筵官曰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近間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台諫政曹者頗多」에 대하여 世宗은 너희들이 게을리말고 一生 學術에 專念하라고 「爾等毋有怠心 專業學術 期以終身」 忠告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世宗 24年에 詹事院의 設置를 契機로 世子機務의 裁決을 위하여 集賢殿學士들이 많이 參與하여 協助하였고, 世宗 32年 10月에는 備邊十策을 비롯한 各種의 施策에 관하여 上疏하였으며 世宗이 薨去하고 文宗이 即位(1451)하면서부터 이들 集賢殿研究員들은 大擧 台諫의 言官으로 進出하여 集團的인 壓力機能을 發揮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集賢殿에서 朱子學과 古制를 研究한 많은 學者와 人材들이 輩出되어 著述編纂을 비롯하여 視事 및 經筵을 통한 政策討議 나아가서는 台諫과 政曹에의 現實參與 등으로 儒敎政治文化를 新王朝에 普及하고 土着化시키는데 中樞的인 役割을 遂行하였다. 이렇듯 儒敎文化가 先代의 佛敎文化를 制壓하면서 新王朝의 政治文化로서 政治社會化와 政治的充員에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 것은, 첫째로 君主秩序下에서 國王인 世宗自身의 經綸과 個人的 文化創造能力의 幅이 그만큼 큰데 따른 그 反映이었으며 둘째로 世宗朝에 이르러 漸次로 官人支配體制가 確立됨에 따라 官人들의 意見과 知識이 政治過程에 幅넓게 投影될 수 있는 政治·文化的背景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性理學이 建國以來로 朝鮮朝의 統治理念 및 敎化原理로서 定立되어 나가는 過程에서 安民保國의 傳統을 계승하고 民族文化를 暢達함으로써 實利를 追求하고 正義를 具現하면서 그 實學的 性格이 새로운 活力으로 定着되는 것은 世宗朝時代이었으며, 이것은 世宗大王의 탁월한 리더쉽에 起因하는 바 컸었다.

2. 世宗朝의 政治·行政思想

世宗朝의 政治·行政思想은 世宗의 政治理念이 크게 反映된 것으로 그 主要特徵을 集約하면 自主精神과 主體性思想, 民本主義, 實用主義的 改革思想 그리고 思想的調和와 均衡의 圖謀 등과 普遍主義的 正義思想과 現實的 實用主義思想의 創造的 調和 등으로 나누어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가. 自主·主體思想

國家建立의 初期事業이 一段落지워지고 比較的 安定期에 접어들은 世宗朝에 이르러 自主性과 主體性을 선양하는 여러가지 治績이 나타나고 있다. 即, 우선 保國精神의 發露를 들을 수 있겠는데, 오래동안 野人問題로 麗代王朝의 큰 두통거리였던 東北地方의 國境線을 確立함으로써 近世的 主權槪念을 定立하였으며 또 獨立自存의 精神과 文化民族의 自負心을 發揮하여 訓民正音을 創製 頒布하였고 아울러 종래의 中國依存의 因襲的 傾向에서 가급적 脫皮하여 自主的인 民族의 主體性을 앙양하려는 努力에서 科學技術의 發展을 진작시키는

同時에 諸般自主化政策이 推進되었으며 나아가서는 因襲과 教條主義를 止揚한 伸縮性 있는 法과 制度의 運用과 傳統을 繼承한 民族文化의 暢達이 追求된 것이다.

무릇 太祖以來로 北方女眞族이 出沒하여 頻繁히 侵略과 掠奪을 恣行하여 그 被害가 막심하였고 國家의 疆域이 애매해서 領土에 대한 意識이 自覺되지 못한 狀態이었으나, 世宗朝에 이르러 數次에 걸친 現地踏査와 防備의 强化 그리고 「祖宗의 舊疆을 寸土라도 줄일 수 없다」는 世宗大王의 의연한 自主精神과 積極的인 北方經略으로 豆滿江流域에 六鎭(世宗 31年에 會寧府, 鍾城府, 穩城府, 慶源府, 慶興府 및 富寧府 등)과 鴨綠江流域에 四郡(慈城郡(世宗 35年) 虞芮郡, 閭延郡 및 茂昌郡(世宗 22年) 등)을 設置하였다. 이 六鎭四郡의 設置는 茂山地方만을 除外하고는 完全히 韓民族의 現今의 北方國境線을 鴨綠·豆滿江의 上流에까지 確保케 한 것으로서 歷史上 劃期的인 事實이었다. 即, 世宗朝에 六鎭이 開拓됨으로써 韓國民族은 版圖上으로 女眞族을 包含한 異種族과의 混合의 길이 封鎖되고 地緣, 血緣 및 文化와 歷史的으로도 하나의 民族을 完成하여 運命共同體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近世國家의 主權確立의 基礎가 된 것으로서 그 政治的 意義가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같은 世宗의 自主·主體精神은 事大交隣의 外交政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勿論 天命思想과 春秋精神을 結合시킨 易姓革命 이데올로기로서 朱子學을 採用하여 新王朝建國을 合理化시키고 大陸의 正統的 天子인 明帝王의 册封과 國號採擇에 있어 明王의 承認으로 所謂 東夷의 稱號로서 朝鮮이란 號稱을 使用하게 되는 「於洪武 25年 閏12月初 9日 欽奉聖旨 東夷之號 惟朝鮮之稱美…」 屈辱的인 節次를 감수하고 아울러 大陸에 대한 恩惠의 禮로 얽혀진 主宗關係의 事大秩序와 慕華思想을 신봉하는 등 主權國家의 自主性에 根本的으로 背馳되는 對明事大主義를 간과할 수 없겠으나, 이러한 事大關係는 當時의 國際情勢로 보아 일단은 不可避한 주어진 與件으로 볼 때 世宗朝에는 그 制約性밑에서도 自主性을 선양하고 主體性을 昂揚하고자 하는 努力이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었다. 例컨대 世宗은 「吾東方 君臣事心 事大之誠」이라 하여 至誠事大를 外交의 지침으로 하면서도 明朝의 無理한 金銀 朝貢 强要를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절충하는 外交수완을 發揮한 것이 事實이다.(1) 또한 世宗 11年 平壤의 箕子廟 남쪽에 檀君祠堂을 마련하고 高句麗 始祖인 東明王이 合祀되어 春秋로 致祭하게 되었고(2) 이로서 그때까지 「朝鮮侯檀君之位」라고 해온 神牌를 「朝鮮檀君」으로 또 「朝鮮侯箕子之位」라고 해온 것을 「後朝鮮始祖箕子」로 고쳤으며(3) 여기서 檀君은 「朝鮮의 始祖」로서 三國의 始祖까지도 檀君에 合祭하는 관례가 생기고 또 「朝鮮의 始祖」라 하는 朝鮮은 勿論 李氏朝鮮朝의 朝鮮이 아니라 「吾東方」 내지 檀君朝鮮이라는 意味를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圓丘 또는 圓壇에서 昊天上帝 및 五帝에 대하여 祈雨祭를 올리는 이른바 圓壇祀

(1) 世宗實錄 第45卷 世宗 11年 己酉 8月 壬辰條 十四 p. 33.
(2) 世宗實錄 第154卷 地理志 平安道平壤條.
(3) 世宗實錄 第49卷 世宗 12年 8月 癸酉條.

天의 禮는 候國의 名分(侯度)에 어긋나는 祀典形式으로 看做되어 朝鮮朝에서는 禁戒가 되고 있는 祭天行事이었다. 그러나 世宗初期[4]에는 圓壇 또는 圓丘에서 祈雨行事를 여러차례 設行한 바 있으며 그후 世宗 9年에 廢止되어 設行되지 않다가 世宗 21年부터는 다만, 風雲雷雨의 祭壇에서만 國王이 天神을 敬祀하는 儀禮로서 設行되어[5] 그 뒤 世祖代에도 繼續되고 있었다.[6]

한편 日本倭敵에 대해서는 交隣關係를 尊重해서 自主的인 强穩의 懷柔政策을 답습하였으며, 倭敵의 頻繁한 侵入에 대하여 釜山, 熊川, 蔚山 등 三港口를 開港해서 物物交易을 하는 餘裕를 보이기도 했으나 平和的 自主外交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三軍都體察使 李從茂로 하여금 對馬島를 征伐케 하여 굴복시키는 등 强硬外交를 단행하기도 한 것이다.

世宗은 또한 事大主臣的 儒臣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한글 28字의 訓民正音을 創製頒布하여 民族文化를 暢達하고 民族主體性을 선양하였으며, 民衆敎化를 위하여 活字 및 印刷術을 꾸준히 改良하는데 힘쓰고, 우리말을 主題로 한 「龍飛御天歌」의 製作을 비롯하여 한글로만 쓰여진 「月印天江之曲」의 刊行과 難解의 漢字佛經을 한글로 註釋한 「釋譜詳節」등을 編纂하였다.

그리고 世宗朝에 天文學에서 自主的 曆法을 創案하여 中國의 授時曆, 大統曆을 參酌하여 「七政算內編」을 撰述하고 回回曆을 얻어 「七政算外編」을 製作하는데 참작하였다. 여기서 曆法의 바탕은 中國의 授時曆을 모방하되 實際의 曆計算에 있어서는 朝鮮을 標準으로 하여 서울에서 관측할 資料를 基準으로 서울의 緯度에 따라서 七政算曆算을 作成하고 있음이 注目되며 또한 醫方類聚, 鄕藥集成方의 編纂, 朝鮮式 火砲의 全面的 改鑄, 靑銅活字에 의한 朝鮮式 活版印刷의 發達, 朝鮮式 地理志의 編纂과 地圖의 作成, 量田制度의 改革 등 科學技術分野에서 自主的 努力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中國의 古制를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高麗代制度를 답습하고 中國古制를 採用하면서도 朝鮮式으로 土着化시켜 우리의 實情에 맞게 變形시켜 適用하려는 努力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例컨데 世宗元年에 科擧試驗制의 運用上의 問題로서 大司憲 許遲가 「大義에 害가 된다면 改革하는 것이 마땅하되 大義에 害가 없으면 六典에 등재된 太祖의 成憲은 變改해서는 안된다. 試驗官이 私心없이 士를 選拔한다면 어찌 不正이 있으리요」「害於義則 更張可也 無害於義 載在六典太祖成憲 不可改也, 掌試者若無私心取士 要有不正者乎」라고 말한데 대하여[7], 世宗은 大司憲의 主張은 매우 正當하다고 하였고, 下季良은 法은 伸縮性있게 必要에 따라 隨時로 變更하는 것이지 어찌 고집할 수 있겠는가(法有隨時而變考豈可固執乎)라고 主張하고 있다.[8] 또한 世宗元年에 便殿의 視事

(4) 世宗實錄 第4卷 世宗元年 6月 8日 辛巳條, 同第7卷 世宗 2年 2月 15日條, 同8卷 世宗 2年 庚子 3月 己巳條 등.
(5) 世宗實錄 第84卷 世宗 21年 2月 甲寅條 同84卷 世宗 21年 7月 己未條.
(6) 世祖實錄 第87卷 世祖 3年 3月 戊寅條.
(7) 世宗實錄 第4卷 世宗 元年 6月 10日條.
(8) 世宗實錄 第2卷 卽位年 戊戌 12月 13日 丁亥條.

에서 술잔을 다시면서 參贊金漸이 「殿下께서 하시는 政事는 마땅히 今上皇帝의 法道를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하니, 禮曹判書 許稠는 아뢰기를 「中國의 法은 본받을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읍니다」 하였다. 金漸은 아뢰기를 「臣은 皇帝가 친히 죄수를 끌어내어 자상히 심문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殿下께서는 본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하니 許稠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官을 두어 職務를 分擔시킴으로써 각기 맡은 바가 있아온데, 만약 임금이 친히 罪囚를 결제하고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官을 두어서 무엇하오리까」 하였다. 金漸은 「時王의 制度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皇帝는 佛敎를 尊重하고 信仰하여 中國의 臣下들은 이른바 歌曲을 외고 읽지 않는 者 없읍니다. 그중에는 어찌 이단으로 배척하는 선비가 없겠읍니까마는 다만, 皇帝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하니 許稠는 「佛敎를 尊重하고 信仰하는 것은 帝王의 聖德이 아니옵기로 臣은 적이 취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世宗은 許稠를 옳게 여기고 金漸을 그르게 여겼던 것이다.(9)

이와 같이 法과 制度의 導入과 運用에 있어서도 中國의 文物에 대한 盲目的 追從을 배격하고 自主性과 實用性을 尊重하는 創意的인 伸縮性이 그 基調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나. 民本思想

世宗朝의 政治思想의 基調로서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自主 主體思想을 든다면,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民本主義思想을 들 수 있겠다. 물론 民本主義는 韓民族이 古代社會 以來로 오랫동안 지녀 온 傳統的 政治文化의 遺産으로서 이러한 政治文化의 傳統은 朝鮮朝에서 儒敎的 統治理念을 통하여 政治秩序를 制度化시켜 가던 世宗朝에 이르러 世宗의 탁월한 經綸에 힘입어 더욱 확고한 내용으로 定着되어간 것이다. 즉, 첫째로 韓民族의 民本主義의 遺制는 新羅의 和白制나 南堂의 慣例 및 麗代의 會議制度 등을 통하여 朝鮮朝에 계승되었고, 둘째로 朝鮮朝의 儒敎的 統治理念에서는 本來 支配(使)와 服從(事)을 君·臣이라는 계급질서로 연결시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人性에는 貴賤이 없다는 性理學的 人本主義와 支配가 服從에 대하여 져야 할 강한 倫理的 責任을 강조하는 爲民政治思想으로 해서 政治는 언제나 萬人의 지배 위에 서야 할 倫理的 善으로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 儒敎政治理念에 당연히 爲民과 德治 및 輿論政治的 性格이 내포되고 있었던 것이며, 세째로 여기에 世宗大王의 人道主義的 탁월한 經綸이 서로 융합되어 世宗朝의 民本主義 政治思想이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된 것으로 본다.

世宗朝의 民本思想은 世宗 3年 領議政 柳廷顯 參贊 卞季良 및 禮曹參判 河演 등이 議政府에서 올린 다음 휘호의 箋文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臣 등은 그윽이 말하기를 「帝王의 道는 크게 公正하여 여러사람의 마음에 순종할 뿐이니 人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늘의 보는 것이 우리 百姓들의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늘의 들

(9) 世宗實錄 第4條 世宗 元年 己亥正月 11日 丙辰條.

는 것도 우리 百姓들의 듣는데서 시작된다. 그런고로 사람의 하고 싶은 것은 하늘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10] 여기서의 帝王之道는 人乃天 또는 民心卽天心의 民本思想이 基底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世宗朝의 民本思想의 基底와 그 發現形態로서의 治績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世宗은 본래 建國初期의 王權을 둘러싼 알력 투쟁과 不幸한 王室環境에서 太宗의 無限한 信任으로 王位에 오른후 新王朝 初期의 守成의 國王으로서 文運을 振作하고 保國安民의 一大改革을 단행하고자 하는 使命意識과 民族的自覺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君主로서 德治政治를 펴기 위하여 修德이 필요하였고, 修德을 위하여 四書五經과 中國의 古制研究에 心血을 기울여 마침 好學의 英明한 君主로서 빛나는 資質을 갖춘 것이다.

世宗 卽位年의 經筵에서 周知經筵 李之剛이 大學衍義를 진강하고 아뢰기를 「人君의 學問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옵나니 마음이 바른 연후에야 百官이 바르게 되고 百官이 바른 연후에야 萬民이 바르게 되옵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 책에 있아옵니다」하니, 世宗이 「그러나 經書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包讀)은 학문에 도움이 없으니, 반드시 마음의 공부가 있어야만 이에 有益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11]

또 同年의 經筵에서 世宗이 「예로부터 간사하고 아첨하는 臣下가 그 임금에게 아양을 부리는 그 형상이 이와 같지마는 그 身命을 끝까지 보전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 鄭招가 「… 반드시 임금이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장되는 근원이 맑고 깨끗해야만 사람들의 진실과 허위에 환하여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갓 文字로서 능히 신하의 간사하고 아첨함을 살피는 일은 예로부터 있지 않습니다」하니 世宗이 「그렇다」고 하였다.[12]

여기서 世宗이 修德함에 있어서 단순히 知識의 습득에 그치지않고 國王으로서 德性과 精神的 資質함양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世宗一代는 거의 每年 한발과 洪水가 잦아서 民生의 苦難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卽位후 數年間은 洪水와 우박과 凶年 등으로 農事를 망치고 百姓飢饉이 막심해서 民心이 동요하였으며 거기다 日·月蝕과 慧星의 出沒같은 天災異變이 빈번해서 官民이 공포속에 두렵게 생각하고 삼가하는 분위기에 잠겼으며 또한 北方野人과 南方倭人의 빈번한 침략 약탈이 겹쳐서 世宗一代에 고난과 우환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朝鮮朝前期의 國家財政이 裕足한 편이고 世宗朝에서 國家財政이 가장 충실했기 때문에 百姓을 위한 各種의 施策을 추진할수 있었다.

이와 같은 命脈에서 여기서 世宗朝의 民本思想을 世宗의 人間尊重思想과 爲民思想 그리고 輿論政治思想과 訓民思想 등으로 나누워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世宗의 人間尊重思想은

(10) 世宗實錄 第13卷 世宗 3年 辛丑 9月 9日 丁卯條.
(11) 世宗實錄 第一卷 世宗卽位年 戊戌 10月 戊子條.
(12) 世宗實錄 第2卷 世宗卽位年 11月 乙亥條.

封建君主니 帝王의 立場에서 下民을 사랑하는 愛民이 아니라 人間世宗이 人間을 사랑하는 人間性의 발로이었다고 본다. 이리하여 世宗은 사람은 平等하다고 宣明하고 奴婢의 人格을 認定하고 그 地位向上에 努力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또한 世宗은 人命을 尊重히 생각하고 人權을 所重히 여겨서 死罪三覆啓의 法(三審制度)을 制定하고, 拷問制度를 改善하여 종래의 笞背法을 笞臀法으로 變更하고, 70歲以上의 高齡者와 15歲未滿의 未成年者로서 殺人强盜가 아닌 以上 禁身 投獄을 禁止하고, 80歲以上의 高齡罪囚의 死刑을 禁止하고, 奴隷의 私刑과 打殺을 禁止하고, 獄中衛生施設을 改善하는 등 司法制의 改善에 각별히 努力하였으며 아울러 無寃錄을 편찬하고 聽獄을 改正함으로써 犯罪를 公正히 調査케하여 억울한 處罰이 없도록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貧民을 구제하고 民生을 安定시키는 여러 施策을 썼다.

世宗朝에서 司法制 運用에 있어서는 法治主義를 강조하였다. 世宗 3年 12月에 世宗은 刑曹에 敎旨를 내리기를 「무릇 死罪를 세차례 거듭 조사해서 아뢰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誤差가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以重人命恐或誤差也) 지금 刑曹에서 二覆三覆할 때 다시 元券은 상고하지 않으니 立法의 본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는 두차례 세차례 거듭 조사하여 아뢸 때에는 元券을 상세히 상고하여 議論을 정한 후에 아뢰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라(啓聞以爲恒式)」하였고[13] 그리고 世宗 3年 한해에 死刑을 처단한 者가 13件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法秩序가 確立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定歲斷死刑十三」[14]

또 世宗朝에서는 奴婢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官廳에 고발하여 法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함부로 미천한 奴婢를 죽이거나 私刑을 加하는 일을 禁止하였으며 만약에 함부로 奴婢를 죽인 者는 「사람을 죽인 者는 죽인다」는 國法에 따라 處罰하도록 敎旨를 내린 바 있는 것이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人間尊重思想과도 密接히 關聯하여 世宗朝의 民本思想에는 爲民思想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世宗은 近臣에게 이르기를 「해를 거듭하는 飢饉으로 百姓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敬差官은 大義를 생각하지 아니하고(不顧大義) 오직 일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왕년에 민간에게 대여한 곡식을 징납하기에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니 敬差官에게 유시하여서 百姓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宮中에 있으므로 民間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이해관계가 民間에게 절실한 것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予在深宮 民間之事 不得盡知 如有利害切於民間者 爾等當悉啓之…)」고 하였다.[15]

여기서 世宗은 民本의 大義를 위해서는 形式的인 法規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

(13) 世宗實錄 第14卷 世宗 3年 辛丑 12月 21日 辛亥條.
(14) 世宗實錄 第14卷 世宗 3年 辛丑 12月 9日 戊戌條.
(15) 世宗實錄 第11卷 世宗 3年 辛丑正月 3日 丙寅條.

였고 또 百姓의 利害가 간절한 일은 모두 深宮에 있는 國王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여 선처하도록 하라고 爲民의 至誠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世宗은 王旨하기를 「百姓이란 것은 나라의 根本이요(民惟邦本) 百姓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 보는 것이다(食爲民天比). 요즈음 수한풍박(水旱風雹)의 재앙으로 인하여 해마다 凶年이 들어 벗벗한 산업을 지닌 百姓까지도 역시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니 너무도 가련하고 민망하다. 戶曹에 명령하여 창고를 열어 구제하게 하고 연달아 知郡을 보내어 나누어 다니면서 고찰하게 한바 守令으로서 百姓의 쓰라림을 돌아보지 않는 자도 간혹 있으므로. 이미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슬프다. 한많은 百姓들이 굶어죽게 된 형상은 不德한 나로서 두루 다 알 수 없으니 監司나 守令으로 무릇 百姓과 가까운 官員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말고 한결같이 그 경내의 百姓으로 하여금 굶주려 처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유의할 것이며 궁벽한 촌락에까지도 친히 다니며 두루 살피어 힘껏 구제하도록 하라. 나는 장차 다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행정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명의 百姓이라도 굶어죽는 자가 있으면 監司나 守令이 모두 敎旨를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논할 것이다」(如有一民飢死者 監司守令並以敎旨不從論)고 하여 百姓이 國家의 根本이며 百姓의 飢饉은 君主의 不德의 所致로 보고 만약에 中央官員을 地方에 파견해서 調査한 결과 「1人의 百姓이라도 굶어죽는 者가 발각된다면 關係地方官은 모두 敎旨를 위반한 者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命令을 하고 있는 것이다.(16)

이렇듯 民本主義政治理念에 있어서는 民生의 安定을 統治의 最高目標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民生의 安定은 德治政治의 具現을 통하여 成就되는 것으로서 그 德治思想下에서는 君德은 天德과 合致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天災地變도 人君의 「不德의 所致」로 보고 君主가 天心을 받들지 못한 탓으로 보기 때문에 충성된 말을 들여주기를 求言하기도 하고 祈禱하고 減膳근신하기도 한 것이다.

世宗元年에 世宗이 代言들에게 이르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政事의 잘못함이 없는가? 널리 옳은 말을 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하니 代言들이 아뢰기를 「착한 말을 구하는 것은 임금의 盛德입니다. 마땅히 王旨를 내리시어 옳은 말을 구하소서」하니 上王이 代言들로 하여금 求言하는 敎書를 기초하게 하다. 敎書에서 이르기를 「내가(世宗) 父王이 중하게 부탁하심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기에 성심을 다해서 풍년이 들고 평화롭기를 바랐더니 돌이켜 생각하건데 덕이 부족하여 천심을 받들지 못하였는지 王位에 임한 처음부터 놀라운 한재를 당하여 기도 드리기를 간절하게 하였으나 조금도 비가 내릴 징조가 없으니(顧惟否德 未享天心 莅政之初 遘懼旱災祈禱 雖切略無雨徵…) 아침 저녁으로 삼가고 두려워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지라 바르고 충성된 말을 들어서 재변이 풀리기를 원하노니 대소臣僚와 閑良기로 (耆老)는 각각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여 이 때의 政事의 잘못된 것과 生民의 질

(16) 世宗實錄 第3卷 世宗 元年己亥 2月 丁亥條 13面.

고를 숨김없이 다 진술하여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고 百姓을 애휼하는 뜻에 부합되게 하라. 그 말이 비록 사리에 꼭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또한 죄주지는 않으리라(…以副予畏天恤民之意 言雖不中 亦不加罪)」 하였다.(17)

또한 世宗 22年의 弭災에 관하여 厖村黃喜는 「殿下가 旱災를 우려해서 山川에 祈禱하고 減膳함에 이르렀으며 天의 경계를 삼가 두려워하였으나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 臣이 囚人의 득사를 건의했다」「殿下 憂旱祈禱山川保於囚人至於減膳其謹天戒而恐懼者至矣而猶未得雨臣以謂赦宥‥」(18)라고 하였다. 무릇 弭災七事와 國王의 減膳은 이른바 天譴을 고정하고 民生을 安定시키는 緊急對策으로서 종종 施行된 것이며 이와 같은 慣例를 통하여 人君의 爲民的 德性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世宗朝에서는 빈번한 政府機構의 減縮과 行政經費의 節用 및 行政能率化를 위한 施策이 단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施策의 動機도 결국 百姓의 負擔을 덜고 民生에 보태고자 하는 愛民思想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例컨데 世宗元年 6月에는 承政院에 命하여 「旱災가 심하니 闕內에서 덜고 줄일 단한 일을 뽑아서 적어 올리라」(旱甚其抄闕內可減省事以聞)하였고(19) 이밖에 水災凶年에 宮中官員의 節用과 끼니를 줄이고 모든 臣民의 自發的 用度節約을 命하는 등 事例가 적지 않았다.(20) 또 世宗 3年에는 下旨하기를 「…여러 曹의 郎廳들이 서류를 싸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다가 자연 公事가 더디게 되니 금후로는 의논대상이 되는 公事로서 下旨가 있을 때에는 政府와 六曹堂上이 한 곳에 모여 가부를 상의 결정하여 빨리 계문하는 것으로 恒定한 法式을 삼으라」(21) 하여 政府內의 公事의 可否決定에 있어 專斷을 배제하고 合議制와 能率化를 촉구한 것으로 注目이 된다.

한편 世宗朝의 民本思想은 그 輿論政治思想에서 뚜렷이 부각이 되고 있다. 즉 國王이 百姓으로부터 좋은 意見을 듣는 求言制度,(22) 下情上達의 方法으로서 申聞鼓制를 비롯하여 擊鼓制(23) 즉 「擊鼓制는 수년前부터 朝鮮朝에서 實施되어 온 制度로서 殿下에게 民意를 거침없이 통달시키고 있으나 往往 順序를 밟지않고 上訴하는 者가 있어 그에게 가혹한 罪를 묻고 있으나 이로는 上訴順序의 是非를 가리지말고 擊鼓를 許容하여 모든 下情을 上達케 하라」「壬辰視事 上語及擊鼓事 參贊金漸對曰 我朝設擊鼓之法已有年矣 今殿下聰明仁恕每事使下情上達而無滯 往往有擊鼓者 或被越訴之罪 甚非聖朝使民無訟之意也 自今無問是非 許令擊鼓皆得上達可也…」)하였고 또 大小軍士의 억울함을 호소케하는 升聞鼓制(24) 「上王命設升聞

(17) 世宗實錄 第4卷 世宗 元年 己亥 6月 2日 乙亥條.
(18) 世宗實錄 第89卷 世宗 22年 庚申 4月 26日 厖村先生文集 1卷之 2 十七.
(19) 世宗實錄 第4卷 世宗 元年 己亥 6月 辛巳條.
(20) 世宗實錄 第12卷 世宗 3年 辛丑 6月 丙辰條 丁亥條.
(21) 世宗實錄 第13卷 世宗 3年 辛丑 8月 5日 乙未條.
(22) 世宗實錄 第4卷 世宗 元年 己亥 6月 乙亥條. (代言等曰求言人主之美德也宜下王旨以求嘉言…)
(23) 世宗實錄 第3卷 世宗 元年 己亥 2月 壬辰條.
(24) 世宗實錄 第5卷 世宗 元年 己亥 9月 乙丑條.

鼓於壽康宮 以伸大小軍士寃抑之情」가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課稅負擔에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貢法改正案을 決定하는데 各 地方의 擔稅農民들의 輿論을 調査하여 投票로서 決定하였다. 一例로서 世宗 12年 7月에 全國의 「單一收租案」에 대한 輿論調査結果가 中央政府에 報告되기 시작하였으며, 戶曹에서는 全國의 賛否輿論을 集計綜合하여 同年 8月 10日에 正式으로 報告書를 提出하고 있다.(25)

이 報告書에서 慶尙道 守令은 人民의 多數者가 賛成하고 少數者는 反對하였다고 보고했으며, 咸吉, 平安, 黃海, 江原 등 道는 모두 反對하였다. 「戶曹判書 安純啓 會以貢法便否許于慶尙道守令 人民可多否少 咸吉, 平安, 黃海, 江原等道 皆曰不可」이와 같이 立法過程에 全國 各 地方人民의 輿論을 調査하여 그 結果를 반영시킨 것은 近代的인 民主主義思想의 發露로서 높게 評價될 만한 일이었다.

끝으로 世宗朝의 民本主義 政治思想의 한 局面으로서 訓民思想을 들을 수 있겠다. 즉 世宗은 罪를 저지르기 전에 三綱五倫을 가르쳐서 먼저 犯法이 없도록 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즉 訓民을 국가통치의 제일의 要件으로 삼았다. 世宗 4年에 六典修撰色을 설치하여 「新撰經濟六典」을 편찬하였을 때에도 世宗은 법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法을 지키고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마구 새법을 만들거나 법이 急變하여 犯法者가 늘어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世宗이 가장 걱정한 것은 整理한 法을 어떻게 해서라도 百姓들에게 알려서 위범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줄어들게 하려던 것이었다. 世宗이 法典整備에 노력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는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 訓民正音을 創作하게 이른 것도 그 背景에는 이와 같은 訓民思想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다. 實用主義的 改革思想

무릇 歷代詞章의 學을 배격한 朱子學을 宗學이라고도 하는 것은 朱子學이 修德正心에 그치지 않고 「兵勇民足」과 經世治國을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26) 「夫兵勇民足 而糧樂興 爲治之道備矣 孔門諸子 其志如此 皆實學也」「朱子學이 朝鮮朝에 普及되어 그 實學的 性格을 理論面과 實際面에서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것은 世宗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見地에서 17·8世紀의 實學運動의 淵源은 世宗朝에 소급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世宗朝의 政治理念이 自主性과 主體性 및 保國과 그리고 民本과 安民을 基調로 삼고 있음은 前述한 바이나, 그 理念을 具現하고 實施하는 데 있어서는 實用 또는 實利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儒敎經書와 中國의 古制를 硏究하여 우리 나라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實用主義的 配慮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世宗 12年에 世宗은 實學

(25) 世宗實錄 第49卷 世宗 12年 庚戌 7月 癸卯條.
世宗實錄 第49卷 世宗 12年 8月 戊寅條.
「戶曹具中外貢法 可否之議…」
(26) 陽村集 卷 33 雜著類策問題

에 힘쓰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으며[27] 「大司成黃玹疏…今之學者爲名 而不務實學 工於文辭者 見稱於朝著名 爲經學者 率老於教授 故爲子弟者 先有心於文辭 而未嘗有 志於經學…」 世宗은 또 四書五經의 經學研究는 學問의 「體」로서 主가 되며 古制나 史學研究는 「用」으로서 實用性을 附加하는 것이라 하여 原理論的인 經學과 實用的인 史學古制와의 均衡과 調和를 갖출 것을 原則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8] 「御經筵講訖…又曰經與史體用相須不可偏廢 然今學者 或有牽於窮經而不讀史學其學經書者 或爲於諸家輯釋而 不究本文與朱子輯註, 朱子輯註 至爲詳備 時之人以爲過於詳也 若大全諸家集解教訓博士則見而訓之可也 侍講官安止對曰經則體史則用固不可偏廢而 至於施諸事業 則史爲切要也」 이렇듯 世宗은 原理와 實用을 調和할 것을 강조하고 편벽되게 어느 한 쪽을 폐할 수 있다 하고 특히 여러 가지 國家事業을 施行하는데 있어 史記가 切實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世宗自身부터 學問하는 態度에 있어서나 國家經綸을 펴는데 있어서 實用主義를 基本指針으로 삼았기 때문에 史學古制나 科學技術 및 民族文化 方面의 編纂과 出版 및 發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國家發展과 文風을 振作하는 찬란한 改革과 事業들이 成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이와같은 實用的 事業들은 計劃하고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人力을 養成하고 이들을 能力에 따라 適材適所에 登用하는 것이 前提가 되기 때문에 世宗은 治政初期부터 集賢殿을 活用하였고 科擧制度를 改革하였으며 아울러 身分的 階級主義를 止揚하여 能力本位의 專門性을 존중하는 實績主義 人事政策을 견지하여 나아간 것이다. 이로서 世宗朝에서 八道地理志·曆法·醫方類聚·農事直說·鄕藥集成·高麗史改修·三綱行實圖·治平要覽 등이 編纂 出版되었고 漏刻·日測器·天體觀測器·測雨器·鑄字法 및 河川測量水標 등의 科學的 發明을 비롯하여 國樂整備·踏驗損實·無寃錄·貢法改革·農業技術發展 등 各 分野의 찬란한 治績이 成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實績主義人事를 科擧制로 改革하고, 숨은 人材 發掘을 위하여 特別採用制로서 道薦法을 새로 實施하고, 賞罰制·考課制 및 京官職 등 人事制度를 改善하고, 身分과 階級을 초월해서 天文官을 서울附近에 重用하고, 雅樂署의 樂工에게 賤役을 禁止하는 등 專門人材養成과 登用에 努力하였다. 또 이와 같은 人事政策은 政治에 있어서 制度도 重要視하지만 그 制度를 擔當하고 運營하는 人間의 人格과 能力을 重要視하는, 換言하면 道義的 善意志로 開發된 人格과 專門的 能力을 兼備할 것을 강조하는 近代的인 組織理論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라. 普遍性과 實用性의 創造的 調和

世宗朝의 政治思想의 한 측면으로서 精神面과 物質面의 兩立, 그리고 道義的 世界의 建設과 經濟生活의 充足을 均衡있게 調和시키는 特質을 들 수 있었다. 그것은 儒教的 大義

(27) 世宗實錄 第49卷, 世宗 12年 8月 庚寅條.
(28) 世宗實錄 第83卷, 世宗 20年 戊午 12月 15日 乙丑條 二十三.

名分論 宗 또는 基本으로 하는 政治思想이나 教條主義的 排儒가 아니며 民族的 自主性과 具體的 實用主義를 중시하고 나아가서는 儒佛同化하여 佛教信仰을 통하여 內面的 宗教生活을 補完하고 道教에 대해서도 星辰信仰과 理解를 갖는 것이다. 특히 世宗의 好佛的 宗教政策은 君主個人의 信仰問題를 넘어서 時代的인 大衆宗教的 教化政策을 意圖한 것으로 그것은 佛教振興보다도 大衆의 健全한 信仰生活을 培養하여 國民的 統合과 調和를 圖謀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思想的 基底에 있어서 保守·復古·傳統的 面을 아울러 兼備하게 되며 義와 利를 兼全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思想的 基底에서 高麗史가 修正되고 朝鮮朝王室의 원수인 鄭夢周를 忠臣으로 再評價한 三綱行實圖가 編修되고 異端視된 佛教와 道教 등의 信仰이 導入되고 風水와 「샤마니즘」을 排斥하여 科學에 關心을 갖고[29] 辨日通要를 편저하여 正論을 취하고 邪說과 俗巫의 고질을 배격하기도한 것이라고 본다. 「贊成致事鄭以吾 …可宰監正 李陽達集辨日通要…」

이상 살핀 바와 같이 世宗朝의 政治思想은 基本的으로 自主思想과, 民本思想, 實用主義, 積極的인 進取精神, 宿命觀을 克服한 實踐的 意志主義, 身分을 초월한 能力本位의 合理的 人事政策 그리고 普遍性과 實用性의 調和 등의 諸特質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3. 結　語

朝鮮朝 建國初 三代 27年間의 近世國家의 政治權力 形成期에 뒤이어 王位에 오른 世宗의 32年間의 治政은 世宗의 主導下에서 近世 儒教主義的 政治文化의 基礎를 구축한 時期에 해당한다. 이 時期에 集賢殿에서 輩出된 많은 學者와 人材들이 學究面에서나 政策實踐面에서 儒教政治文化를 新王朝에 普及하고 土着化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遂行하였다. 世宗大王의 탁월한 經綸과 幅넓은 文化創造能力에다 官人學者들의 意思가 政治過程에 幅넓게 投影되어 마침내 保國安民의 傳統을 계승 發展시키고 民族文化를 창달함과 아울러 政治文化와 科學技術을 發展시켜 文運振作의 새로운 活力을 定着시켰다.

世宗朝의 政治·行政思想의 基調는 첫째로 自主·主體思想이었다. 그 思想이 土臺가 되어 東北地方의 國境線을 確定함으로써 近世的 主權槪念을 定立하였으며, 制約된 與件下에서의 至誠事大는 고사하고라도 交隣의 外交政策, 朝鮮始祖 檀君의 合祭圓壇祀天禮, 訓民正音의 創製頒布, 自主的 曆法의 制作, 科學技術分野의 찬란한 自主的 努力, 制度運用에 있어서의 教條主義를 止揚한 伸縮性, 中國古制의 自主的 適用 등의 治績이 成就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民本思想을 들을 수 있겠다.

民本主義는 韓民族의 文化的 傳統의 遺産으로서 世宗朝에 이르러 性理學의 倫理性과 世宗의 人道主義的 領導力과도 融合되어서 더욱 확고한 內容으로 定着되었다. 民本思想은 人

(29) 世宗實錄 第3卷, 世宗 元年 3月條 二十.

乃天 또는 民心卽 天心 그리고 君德과 天德과의 合致思想 등을 바탕으로 하는 爲民德治思想에 根底한 것으로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진다.

1) 人間尊重思想의 特性을 지닌다. 즉 人間의 生命을 尊重하고 人權을 所重히 여겨 諸般 司法制度와 施設을 改革하고 法治主義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爲民思想의 特性을 가진다. 그 反映으로서 貧民과 飢民을 구제하고 百姓의 쓰라림을 돌보아 民生을 安定시키고 萬一 1人의 百姓이라도 굶어죽는 者가 발각되면 關聯監司나 守令을 모두 敎諭의 違反者로서 處罰하겠다는 적어도 이 面에서는 철저한 責任行政을 世宗自身이 率先하여 實施하고 있으며 民間에게 利害가 크게 미치는 事項은 모두 國王에게 報告토록 하여 處理하였다. 또 世宗은 爲民의 至誠으로 天災地變도 人君의 不德의 所致로 간주하여 祈禱와 減膳으로 근신하였으며 또 百姓의 負擔을 덜고 民生에 보태고자 政府機構를 減縮하고 行政經費를 節用하고 行政能率化를 위한 施策을 마련하였다.

3) 輿論政治思想의 特性을 가진다. 즉 世宗朝에서 求言制度, 擊鼓制, 升聞鼓制, 輿論調査 등이 活用되어 民意를 上達하여 民生安定을 도모하고 또 百姓의 廣範圍한 輿論을 國家課稅 政策決定에 反映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訓民思想의 特性을 지닌다. 즉 世宗은 百姓을 편히 살게 하기 위하여 法典整備에 努力하는 동시에 우선 百姓에게 三綱五倫을 가르치고 法令內容을 알기 쉽게 充分히 理解시킴으로써 百姓들중 違反者나 犯法者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게 하도록 努力하였다. 이와같은 德治主義的 訓民을 國家統治의 제일의 要件으로 삼은 것이며 世宗이 六典修撰色을 設置하여 新撰經濟六典 등을 編纂하고 또 訓民正音을 頒布한 것도 訓民의 實效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다음 世宗朝 政治思想의 세째의 基調로서 實用主義的 改革思想이었다. 本來 性理學에는 經世治國을 目的으로 하는 實學的 性格이 내재하고 있었으나, 世宗朝에 이르러 世宗의 垂範과 권장에 힘입어 理論과 實際面에서 實學的 改革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여기서 17,8世紀 朝鮮朝 實學運動의 基盤을 구축하였다고 본다. 世宗朝의 實學思想은 四書五經의 經學硏究를 宗으로 삼고 古制나 史學 등의 經驗的 資料들을 實用的으로 調和시켜 適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았다. 世宗朝의 學風이나 政治가 이러한 實用主義를 基本指針으로 삼았기 때문에 各方面의 人材를 養成하여 適材適所로 登用함으로써 保國安民에 實效를 거두고 科學技術이 發達하고 民族文化가 暢達된 것이라고 본다.

네째의 思想的 基調로서 調和와 均衡을 圖謀하고 특히 普遍性과 實用性을 創造的으로 調和시킨 點에서 또 하나의 思想的 特性을 찾아볼 수 있겠다. 즉 世宗朝의 政治思想의 基底에는 精神面과 物質面이 兩立되고 道義政治具現과 經濟生活充足의 均衡的 調和를 도모하고 있으며, 信仰面에서도 儒敎만에 執着하지 않고 佛敎信仰을 통하여 宗敎生活을 補完하고 道敎에 대해서도 理解를 갖는다. 따라서 政策追求에 있어 敎條主義的 僻儒에 그치지 않고 實

用主義의 伸縮性을 尊重하며 保守·復古傳統에 그치지 않고 革新·改革·創造를 志向한다. 高麗史의 修正, 三綱行實圖에서의 鄭夢周의 再評價, 그리고 風水와 「샤마니즘」을 排斥하여 科學主義를 指向한 點 등은 그 한 端面이라 하겠다.

끝으로 世宗朝政治 思想에서 爲民愛族의 自主精神과 積極的 進取精神, 中世 封建社會의 意識構造로서의 宿命觀을 克服한 實用性과 科學性을 追求하는 實踐的 意志主義, 指導者로서의 政治的 信念과 信條에 대한 忠實한 姿勢 및 社會身分秩序에 구애되지 않는 能力本位의 合理的인 人事政策 등의 諸特性은 思想史的으로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